

파주금촌 금호어울림(조합원 취소분) 입주자 모집공고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선시공 후분양(2025년 10월 31일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아파트로 계약 체결 후 공급대금 완납 시 즉시 입주가 가능합니다.**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1877-9720

주택유형		해당지역	기타지역	규제지역여부	
민영		경기도 파주시 거주자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비규제지역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없음	6개월	없음	미적용	민간택지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특별공급 접수일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6.04.24.(금)	2026.05.04.(월)	2026.05.06.(수)	2026.05.07.(목)	2026.05.13.(수)	2026.05.16.(토) ~ 2026.05.19.(화) [4일간]	2026.05.25.(월) ~ 2026.05.27.(수) [3일간]

1 공통 유의사항

- 본 아파트는 공정을 100% 이후 분양하는 후분양 단지로 발코니 확장을 고려하여 설계 및 시공되어 미확장형 세대는 공급하지 않습니다. 이점 필히 인지하시어 청약 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주택법 제54조 제1항 제2호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장판, 벽지, 조명, 위생기기, 타일, 창호, 가구, 주방가구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시공할 품목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 옵션 품목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본 아파트는 선시공 후분양 단지로 공정 진행 상 마이너스 옵션 선택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5.10.3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2024.10.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자격요건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1순위(12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가입
세대주 요건	-	-	-	필요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적용	-	적용	-	-

- ※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의 지역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 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유형	당첨자 선정	예비입주자 선정	동호수 결정
특별공급	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 까지 추첨으로 선정	특별공급/일반공급 구분 없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일반공급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 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순으로 선정(동점 시 추첨)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청약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기관추천 예비대상자 포함)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pjkhapt.com>)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상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배정하지 않습니다.
-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과 제3호에 해당하는 분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자가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보다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층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적은 경우에는 최하층 우선배정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사·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신청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 시 청약 신청가능

※ 단, 일부 은행에 한하여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에서 종합저축으로 최초 청약접수일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 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련 사항은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단, 청약자격 및 순위 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산정)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 인증서	금융 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KB국민 인증서	토스 인증서	신한 인증서	카카오 인증서
APT (특별공급 / 일반공급 1·2순위)	○		○				

※ 단, APT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의 청약신청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가능합니다.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04.24.(금)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파주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경기도 파주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일 정	2026.05.04.(월)	2026.05.06.(수)	2026.05.07.(목)	2026.05.13.(수)	2026.05.16.(토) ~ 2026.05.19.(화)	2026.05.25.(월) ~ 2026.05.27.(수)
방 법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인터넷 청약 (09: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당사 주택홍보관 방문 (10:00 ~ 16:00)	
장 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현장접수 : 청약통장 가입은행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주택홍보관 : 경기도 파주시 평화로36, 상가동 124호(금촌동) ■ 반드시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방문 ■ 접수 방법, 일정 및 운영시간 등 자세한 사항은 추후 안내 예정 ※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및 동·호수 추첨, 계약체결 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사업주체 주택홍보관 현장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이 주택의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의 청약신청은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할 수 있으며 노령자, 노약자, 장애인, 거동불편자 분들의 편의를 위하여 청약일에 파주금촌 금호어울림 주택홍보관에 방문하신 경우 청약신청 안내 및 도움을 드립니다.
- 본 주택은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도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은 불가함)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9항에 의거 국방부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자는 수도권(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지역의 의무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청약 추천자는 청약Home을 통한 인터넷(PC, 모바일)청약만 가능(주택홍보관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경기도 파주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2026.05.13.)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3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파주시 주택과 - 16230호(2026.04.15.)**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337-15번지(금촌2동제2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3층, 지상 최고 29층 7개동 / 총 1,055세대 중 **조합원 최소분 60세대**
[특별공급 34세대(기관추천 6세대, 다자녀가구 6세대, 신혼부부 14세대, 노부모부양 2세대, 생애최초 6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6년 06월 예정** (본 아파트는 선시공 후분양[2025년 10월 31일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아파트로 계약체결 후 공급대금 완납시 입주가 가능합니다.)
- **공급대상**

(단위: m², 세대)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m ²)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2026000143	01	026.9146	26	26.9146	11.8217	38.7363	28.3722	67.1085	13.9472	5	1	-	-	-	1	2	3	-
	02	046.7967	46	46.7967	19.5678	66.3645	49.3311	115.6956	24.2501	6	1	-	2	-	2	5	1	-
	03	059.8551A	59A	59.8551	25.2298	85.0849	63.0967	148.1816	31.0169	39	4	4	9	1	3	21	18	-
	04	059.8387B	59B	59.8387	26.0643	85.9030	63.0794	148.9824	31.0084	2	-	-	1	-	-	1	1	-
	05	074.9777	74	74.9777	31.0649	106.0426	79.0383	185.0809	38.8535	8	-	2	2	1	-	5	3	-
	합 계									60	6	6	14	2	6	34	26	-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m²)으로 기재하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단위인 제곱 미터(m²)로 표기하였으니 청약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m²) × 0.3025 또는 공급면적(m²)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생활지원센터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최하층이라 함은 각호의 최저층을 말하며 1층 또는 2층이 필로티인 경우 필로티 바로 위층을 최저층으로 합니다.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인하여 연면적과 세대별 계약면적 합과는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는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법 및 관련 법령에 의거 주택형별 공급면적(주거전용+주거공용)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입주시 지적확정측량 결과 및 공부정리 결과에 따른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가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미 청약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주택홍보관 및 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 표시 안내

주택형	026.9146	046.7967	059.8551A	059.8387B	074.9777
홍보관 등의 약식표기	26	46	59A	59B	74

■ 특별공급 공급세대수

구 분(약식표기)		26	46	59A	59B	74	합 계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1	-	2	-	-	3
	장애인	경기도	-	1	-	-	1
		서울특별시	-	1	-	-	1
		인천광역시	-	1	-	-	1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파주시 및 경기도(50%)	-	-	2	-	1	3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50%)	-	-	2	-	1	3
신혼부부 특별공급		-	2	9	1	2	1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	1	-	1	2
생애최초 특별공급		1	2	3	-	-	6
합 계		2	5	21	1	5	34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세대, 원)

약식표기 (타입)	공급 세대수	동/라인	공급금액			계약금 (정액제) 계약 시	잔 금 (공급금액-계약금) 입주지정일
			대지비	건축비	계		
26	5	105동 14~18호	25,474,000	156,226,000	181,700,000	5,000,000	176,700,000
46	6	106동 1~3,5,7호	75,241,000	236,059,000	311,300,000	10,000,000	301,300,000
59A	39	101동 1,2,4호 102동 1~3호, 103동 1호	123,521,000	275,579,000	399,100,000	20,000,000	379,100,000
59B	2	102동 4호	124,178,000	274,722,000	398,900,000	20,000,000	378,900,000
74	8	101동 3호	192,256,000	305,044,000	497,300,000	20,000,000	477,300,000

※ 편집 및 인쇄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본 주택홍보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

타입	26	46	59A	59B	74	비 고
공급가격	무상	무상	무상	무상	무상	-

※ 본 단지는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무상 시공됩니다. (발코니 비확장 선택 불가)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주택홍보관 및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사업주체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합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에는 외부 사시, 확장형 주방가구, 확장 부위 마감 설치 비용이 포함됩니다.

■ 공통사항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상에 표기된 면적은 사업계획승인 기준의 면적을 적용하였습니다.
- 주택형 구분은 공고상에 표기이며, 주택홍보관 및 홍보 제작물 등에는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시 반드시 위 공급대상의 '주택형'으로 청약하십시오.
- 주택형 표기 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청약신청 시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0.3025 또는 공급면적(㎡)÷3.3058]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그 외 면적은 중심선 치수로 산정합니다.
- 주택홍보관이 건립되지 않으므로 청약신청 시 공급안내문 및 사이버모델하우스에 표기된 주택형별 형태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 면적합산 시 단수조정으로 계산한 값이 적용되어 소수점 4자리로 산정하였으며, 단수조정에 따른 합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준용하여 공동주택의 총 대지지분을 주택형별 공급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실, 복도, 세대벽체면적 등의 주거공용면적과 주차장,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주차장 및 지하피트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 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 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상기 공부상 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 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登記면적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계약 시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은 별도 분양대상으로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전용 85㎡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 분양가에 계산이 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 관련 조세(종합토지세 등)는 추후 부과되는 실 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 납부 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 기준)
- 전산검색 결과 당첨사실 및 주택소유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되오니 청약 신청 시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십시오.
- 상기 공급금액에는 2016.08.12.개정 「주택법」 제57조에 의거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매출 총 금액을 기준으로 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차등을 두어 사업주체에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일정 미숙지로 인한 문제 발생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대금은 계약금(정액제), 잔금(공급금액-계약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잔금 납부 약정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최초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연체료 납부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에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고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시사용승인 또는 동별 사용검사를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위 단서조항이 적용되지 않음)

- 본 아파트의 판매조건은 판매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멸기간 이내에 소멸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부적격자로 판명됨으로 인한 청약예금 통장 사용불가 등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사업주체, 시공사, 분양대행사 등의 책임이 아님)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 및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 본 아파트는 실제로 입주하실 분들을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할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되오니 유의하십시오.
- 본 아파트 공사 중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암반발견, 노동조합의 파업·태업, 전염병 발생 등과 정부의 정책,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 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입주지연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입주지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국토교통부에서 요청 시 분양계약 관련사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주택규모의 표시는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하였으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일부세대는 공사 진행중에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선행세대로 사용될 수 있으며, 선행세대의 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마감재의 파손, 훼손에 대해서는 준공 전 보수 또는 재시공하여 인도합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사업주체의 책임이 없습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사업주체, 시공사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청약 및 계약 시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당사에 즉시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통보하여 주십시오.
-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주택홍보관 및 인허가 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십시오.
- 청약(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및 공급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사본 불가)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고 일정기간 보관 후 폐기합니다.
- 계약 전 주택홍보관 모형도 및 배치도, 카탈로그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주택홍보관으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4

특별공급

[2025.03.3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 (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개정 사항]

조항	특별공급 신청유형	내용	유의사항
제1항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 배제)	신혼부부 생애최초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적용횟수 제한 없음
	생애최초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혼인 전 처분완료한 경우에 한함)	
제2항 (혼인특례)	신혼부부	청약신청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혼인특례는 본인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제3항 (출산특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24.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또는 '24.6.19. 이후 출생한 사람을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경우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제55조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 가능	- 출산특례는 세대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 특별공급 횟수 제한 외 다른 청약 제한사항은 배제할 수 없음

		→ 이 경우, 특별공급의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신청 가능 * 기존주택 처분 조건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 - 1.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 - 2.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한 서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각 호)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할 것 - 3.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 → 이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공공주택 제외) 추첨제 청약신청자의 부동산가액 산정 시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액은 합산하지 않음	-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없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 외의 세대원이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	--	--	--

※ 혼인특례 또는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청약하려는 분은 청약신청 시 특례 사용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청약신청 시 선택한 특례 사용여부는 변경·취소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여 본 주택의 특별공급 입주자 및 추가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 없이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례 사용자로 명단 관리하며 향후 혼인특례 사용자 본인은 혼인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고, 출산특례 사용자가 속한 세대는 출산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지 않아도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이 착오에 의해 특례를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례 사용 사실은 정정될 수 없으며, 특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분이 특례를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혼인특례와 출산특례를 동시에 사용하여 청약할 수 없습니다.

※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특별공급에 당첨된 분이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기존주택 처분 완료함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입주가 불가합니다.

구분	내용		
공급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무주택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요건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청약통장 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table><tr><th>구 분</th><th>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th><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th>그 밖의 광역시(인천광역시)</th></tr><tr><td>전용면적 85㎡ 이하</td><td>200만원</td><td>300만원</td><td>250만원</td></tr><tr><td>전용면적 102㎡ 이하</td><td>300만원</td><td>600만원</td><td>400만원</td></tr><tr><td>전용면적 135㎡ 이하</td><td>400만원</td><td>1,000만원</td><td>700만원</td></tr><tr><td>모든면적</td><td>500만원</td><td>1,500만원</td><td>1,000만원</td></tr></table>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구 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인천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구 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인천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4-1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6세대
------------	---------------------------------------	---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추천기관	기관추천 특별공급 유형		추천기관	청약통장 구비여부
	국가유공자		경기북부보훈지청 복지과	청약통장 필요없음
	장애인	경기도	경기도 장애인 복지과	
		서울특별시	서울시 장애인 자립지원과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장애인 복지과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6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파주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및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배점 → ③미성년 자녀수 → ④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 ■ ①지역 : 주택형별 대상 세대수의 50%를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시도(파주시 및 경기도)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기타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공급하되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파주시 및 경기도 거주자가 50% 우선공급에서 낙첨될 경우, 나머지 50% 물량에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와 다시 경쟁하며 이 경우, 해당지역 거주 신청자 우선공급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②배점 <table> <tr> <th rowspan="2">배점항목</th><th rowspan="2">총배점</th><th colspan="2">배점기준</th><th rowspan="2">비고</th></tr> <tr> <th>기준</th><th>점수</th></tr> <tr> <td>계</td><td>100</td><td></td><td></td><td></td></tr> <tr> <td rowspan="3">미성년 자녀수(1)</td><td rowspan="3">40</td><td>4명 이상</td><td>40</td><td rowspan="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td></tr> <tr> <td>3명</td><td>35</td></tr> <tr> <td>2명</td><td>25</td></tr> <tr> <td>영유아 자녀수(2)</td><td>15</td><td>3명 이상</td><td>15</td><td>-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td></tr> </table>				배점항목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4명 이상	4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3명	35	2명	25	영유아 자녀수(2)	15	3명 이상	1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배점항목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4명 이상	4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3명	35																											
		2명	25																											
영유아 자녀수(2)	15	3명 이상	1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2명	10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전체를 해당 시·도로 봄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순위확인서로 확인

4-3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23% 범위 : 14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파주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및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당첨자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순위 →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

■ ①소득구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2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10%)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3단계	우선공급 (2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4단계	일반공급 (10%)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5단계	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1단계 및 2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②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의 순서에 따라 선정
※ 5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지역 거주자(파주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 ②순위

순위	내용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 ③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파주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경기도 및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비고

■ 자녀기준

- 자녀는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포함

* 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

- (②순위 판단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가능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재혼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6.04.24.(금)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	~7,533,763원	~8,802,202원	~9,326,985원	~9,906,263원	~10,485,541원	~11,064,819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9,040,516원	~10,562,642원	~11,192,382원	~11,887,516원	~12,582,649원	~13,277,783원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40% 이하	7,533,764원~ 10,547,268원	8,802,203원~ 12,323,083원	9,326,986원~ 13,057,779원	9,906,264원~ 13,868,768원	10,485,542원~ 14,679,757원	11,064,820원~ 15,490,747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9,040,517원~ 12,054,021원	10,562,643원~ 14,083,523원	11,192,383원~ 14,923,176원	11,887,517원~ 15,850,021원	12,582,650원~ 16,776,866원	13,277,784원~ 17,703,710원
추첨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0,547,269원~	12,323,084원~	13,057,780원~	13,868,769원~	14,679,758원~	15,490,748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2,054,022원~	14,083,524원~	14,923,177원~	15,850,022원~	16,776,867원~	17,703,711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건축물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토지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업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4-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2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파주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및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파주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경기도 및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②가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가점제 적용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부적격 당첨 처리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 가점 산정기준 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table><tr><th>가점항목</th><th>가점상한</th><th>가점구분</th><th>점수</th><th>가점구분</th><th>점수</th></tr><tr><td rowspan="3">①무주택기간</td><td rowspan="3">32</td><td>만30세 미만 미혼자</td><td>0</td><td>8년 이상 ~ 9년 미만</td><td>18</td></tr><tr><td>1년 미만</td><td>2</td><td>9년 이상 ~ 10년 미만</td><td>20</td></tr><tr><td>1년 이상 ~ 2년 미만</td><td>4</td><td>10년 이상 ~ 11년 미만</td><td>22</td></tr></table>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하지 않음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비고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

4-5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9% 범위 : 6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파주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및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혼인 전 처분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 1인 가구는 주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 함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 ①소득구분 <table><tr><th>단계</th><th>소득구분</th><th colspan="2">내용</th></tr><tr><td>1단계</td><td>신생아 우선공급 (15%)</td><td colspan="2">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td></tr><tr><td>2단계</td><td>신생아 일반공급 (5%)</td><td colspan="2">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td></tr><tr><td>3단계</td><td>우선공급 (35%)</td><td colspan="2">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td></tr><tr><td>4단계</td><td>일반공급 (15%)</td><td colspan="2">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td></tr><tr><td rowspan="2">5단계</td><td rowspan="2">추첨공급</td><td>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td><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tr><tr><td>1인 가구</td><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tr></table>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②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파주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경기도 및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3단계	우선공급 (3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4단계	일반공급 (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5단계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1인 가구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3단계	우선공급 (3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4단계	일반공급 (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5단계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1인 가구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비고	■ 자녀기준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6.04.24.(금)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130% 이하	~9,793,892원	~11,442,863원	~12,125,081원	~12,878,142원	~13,631,203원	~14,384,265원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130% 초과 160% 이하	9,793,893원~ 12,054,021원	11,442,864원~ 14,083,523원	12,125,082원~ 14,923,176원	12,878,143원~ 15,850,021원	13,631,204원~ 16,776,866원	14,384,266원~ 17,703,710원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2,054,022원~	14,083,524원~	14,923,177원~	15,850,022원~	16,776,867원~	17,703,711원~
	1인 가구	160% 이하	~12,054,021원	~14,083,523원	~14,923,176원	~15,850,021원	~16,776,866원	~17,703,710원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2,054,022원~	14,083,524원~	14,923,177원~	15,850,022원~	16,776,867원~	17,703,711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토지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업」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자격 관련 기타 예외사항(「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별표3)				
군복무 중이어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없는 경우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 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소득을 산정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구분	내용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파주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및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청약통장 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1순위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table><tr><th>구 분</th><th>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th><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th>그 밖의 광역시(인천광역시)</th></tr><tr><td>전용면적 85㎡ 이하</td><td>200만원</td><td>300만원</td><td>250만원</td></tr><tr><td>전용면적 102㎡ 이하</td><td>300만원</td><td>600만원</td><td>400만원</td></tr><tr><td>전용면적 135㎡ 이하</td><td>400만원</td><td>1,000만원</td><td>700만원</td></tr><tr><td>모든면적</td><td>500만원</td><td>1,500만원</td><td>1,000만원</td></tr></table>				구 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인천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구 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인천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③추첨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파주시) → 기타지역 거주자(경기도 및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②가점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																												
	<table><tr><th>구분</th><th>가점제</th><th>추첨제</th></tr><tr><td>전용면적 60㎡ 이하</td><td rowspan="2">40%</td><td rowspan="2">60%</td></tr><tr><td>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td></tr></table>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 이하	40%	60%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 이하	40%	60%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 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table><tr><th>가점항목</th><th>가점상한</th><th>가점구분</th><th>점수</th><th>가점구분</th><th>점수</th></tr><tr><td rowspan="4">①무주택기간</td><td rowspan="4">32</td><td>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td><td>0</td><td>8년 이상 ~ 9년 미만</td><td>18</td></tr><tr><td>1년 미만</td><td>2</td><td>9년 이상 ~ 10년 미만</td><td>20</td></tr><tr><td>1년 이상 ~ 2년 미만</td><td>4</td><td>10년 이상 ~ 11년 미만</td><td>22</td></tr><tr><td>2년 이상 ~ 3년 미만</td><td>6</td><td>11년 이상 ~ 12년 미만</td><td>24</td></tr></table>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본인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배우자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미가입	0	1년 이상 ~ 2년 미만	2
			1년 미만	1	2년 이상	3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표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50% 적용)	점수
1년 미만	6개월 미만	1점
1년 이상 ~ 2년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
2년 이상	1년 이상	3점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
-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
- 청약 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확인 해야하며, 향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우자의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적격함을 증빙해야 함
 -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 당첨사실 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위확인서 발급 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적격증빙을 위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유지 필요

-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1)

구 분	내 용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9호 각 목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소형·저가주택)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 4)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가족관계증명서, (3)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4)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4)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5)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초본, (2)가족관계증명서, (3)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1순위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 단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단계	비율	내용
	1단계	추첨제 물량의 75%	무주택세대구성원
	2단계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3단계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비고	■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5-1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 등
주택처분 기준일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 | 조항 |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 주거전용면적 | 수도권 | 비수도권 |
|-----------|------------------|--------|---------|------|
| 제53조제9호가목 |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 60㎡ 이하 | 1억 6천만원 | 1억원 |
| 제53조제9호나목 | 단독주택 | 85㎡ 이하 | 5억원 | 3억원 |
| |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 | | |
| | 도시형 생활주택 | | | |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일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현장접수,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10:00~14:00 사업주체 주택홍보관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현장접수 시 필요서류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함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필요서류

본인 신청 시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서류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	-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일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 - 이용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당첨자발표 서비스	청약홈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6.05.13.(수) ~ 2026.05.22.(금)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 제공일시 : 2026.05.13.(수)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서류 제출 안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및 제52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신청자격별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청약 내역과 대조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기간 내 자격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 진행이 불가합니다.

구 분	내 용
대 상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제출기간	2026.05.16.(토) ~ 2026.05.19.(화), 4일간 / 10:00 ~ 16:00 ※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일정은 별도 통보
제출방법	주택홍보관 방문접수
제출장소	경기도 파주시 평화로36, 상가동 124호(금촌동)

■ 유의사항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정당 당첨자는 서류제출 기간 내에 관련 서류를 필히 제출 해야하며 상기 서류제출 일정 이외에는 방문이 불가합니다.
- 당첨자에 한해서 제출서류를 접수하며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기 바랍니다.(세대주, 해당지역 거주기간, 주택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등)
- 자격확인서류 제출 시 구비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의 경우도 접수가 불가합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해야 하며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 요구 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소명자료 추가제출 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예정이며, 미제출 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서류 미제출로 자격 확인이 안 될 경우 계약일에 계약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로 간주됩니다. (배우자, 직계존비속도 대리 신청자로 봄)
- 서류심사를 진행하고 적격여부를 확인받아 계약체결을 진행하여도 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되며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 됩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기간 내 제출이 어려운 당첨자의 경우 주택홍보관으로 통지 후 계약체결 전 자격검증서류 일체 및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 단, 계약체결 시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절차로 계약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신청 내용과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른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할 때까지 계약서 발급이 되지 않으며, 미소명시에는 부적격자임을 확인하여야 최종 부적격 처리(청약 통장 부활)되며, 서류 미제출로 인해 미확인 시 계약 포기로 간주하여 부적격이 아닌 일반 당첨자로 분류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및 동호추첨 일정은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 당첨자 자격확인 제출 서류 (예비입주자 포함)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인	• 당사 주택홍보관에 비치
	○		서약서	본인	• 당사 주택홍보관에 비치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12.21 이후 신규발급분인 경우 여권정보증명서로 발급) ※ 외국국적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인감증명서(본인 발급용)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본인 발급용) /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신청 및 대리계약 불가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두 포함하여 “상세”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본인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두 포함하여 “상세”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공급신청자와의 관계 ※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출입국사실증명서	본인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1961년 이전 출생자는 1961.1.1.부터) ※ 기관추천 특별공급 청약신청자의 경우 미제출 ※ 개명한 경우, 개명한 시점에 따라 개명전 출입국사실을 추가 제출 할 수 있음
		○	복무확인서	본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추가 제출(상기 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	해외체류 증빙서류	본인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직인날인) 및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①,② 모두 반드시 제출)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 ※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첨부 필수임
		○	출입국사실증명서	배우자 및 세대원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1961년 이전 출생자는 1961.1.1.부터)
		○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해당자	- 여권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 청약신청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세대원이 해외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국외 체류기간 연속 90일 미만)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직계존속	-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직계존속과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등재 확인 ※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기관추천 특별공급	○		특별공급 대상 증명서류	본인	해당 추천 기관장이 사업주체에게 통보한 추천명부로 접수함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배점기준표	본인	당사 주택홍보관에 비치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주택공급신청자가 성평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 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	기존주택 처분 서약서	본인	-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당첨된 유주택자의 경우 - 당사 주택홍보관에 비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3세대 구성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된 경우 - 재혼가정의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직계존속	3세대 이상 구성 배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상 본인과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이상 주소변동내역 표시하여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 만 18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을 "미성년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자녀가 입양의 경우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표기, "상세"로 발급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 당사 주택홍보관에 비치
신혼부부 특별공급	○		신혼부부 자격요건 확인서	본인	• 당사 주택홍보관에 비치
		○	기존주택 처분 서약서	본인	•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당첨된 유주택자의 경우 • 당사 주택홍보관에 비치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자녀가 입양의 경우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표기, "상세"로 발급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 당사 주택홍보관에 비치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의 과거 변동사항 전부 포함, 표기하여 발급
	○		소득증빙 서류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의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포함) (아래 [표1]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 ※ 전년도 소득이 없고, 현재 근로자가 아닌 경우 : 전년도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을 반드시 제출 ※ 현재 또는 작년 출산 휴가를 받았을 경우 : 출산 전월 휴가급여지급 명세서(월별)
		○	비사업자 확인각서		• 당사 주택홍보관에 비치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	부동산소유현황 및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본인 및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자산입증서류 (아래 [표1]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직계존속	• 주택공급신청자(배우자 포함)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등재된 경우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배점표	본인	• 당사 주택홍보관에 비치
		○	기존주택 처분 서약서	본인	•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당첨된 유주택자의 경우 • 당사 주택홍보관에 비치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직계존속	주택공급신청자(세대주여야함)와 피부양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여부 확인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직계비속	만 30세 이상의 미혼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직계존속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수에 포함한 경우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출입국사실증명서(상세)	직계존·비속	- 발급기간 : 직계존·비속의 출생일부터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예 또는 Y로 설정하여 발급 ※ 직계존속 부양가족 제외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 에서 제외 ※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사항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피부양 직계존속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		피부양 직계비속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당첨자의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
생애최초 특별공급	○		생애최초 자격요건 확인서	본인	당사 주택홍보관에 비치
		○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자녀가 입양의 경우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표기, "상세"로 발급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당사 주택홍보관에 비치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의 과거 변동사항 전부 포함, 표기하여 발급
	○		소득증빙 서류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의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포함) (아래 [표1]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

					※ 전년도 소득이 없고, 현재 근로자가 아닌 경우 : 전년도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을 반드시 제출 ※ 현재 또는 작년 출산 휴가를 받았을 경우 : 출산 전월 휴가급여지급 명세서(월별)										
		○	비사업자 확인각서		• 당사 주택홍보관에 비치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		소득세 납부 인증 서류	본인	• 주택공급신청자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통산하여 5개년도 이상의 소득세 납부 인증서류. ※ 아래 [표1] 소득증빙서류 및 [표2]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인증 제출서류 참조. <table><tr><th>구분</th><th>서류구분</th><th>확인자격</th><th>소득세납부 인증서류</th></tr><tr><td rowspan="2">소득세 납부 인증서류</td><td>근로자 및 자영업자인 경우</td><td>①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td><td rowspan="2">※아래[표2] 참고</td></tr><tr><td>근로자 및 자영업자 아닌 경우</td><td>①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 한 자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한 자</td></tr></table> ※ 해당연도에 소득세 납부 및 1년 기간 동안 12개월 이하로 근무하여 납부한 경우도 1개년의 실적으로 인정함	구분	서류구분	확인자격	소득세납부 인증서류	소득세 납부 인증서류	근로자 및 자영업자인 경우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아래[표2] 참고	근로자 및 자영업자 아닌 경우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 한 자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한 자
	구분	서류구분	확인자격	소득세납부 인증서류											
	소득세 납부 인증서류	근로자 및 자영업자인 경우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아래[표2] 참고											
		근로자 및 자영업자 아닌 경우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 한 자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한 자												
		○	부동산소유현황 및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본인 및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자산입증서류 (아래 [표1]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으로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 만 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직계존속	• 주택공급신청자(배우자 포함)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등재된 경우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일반공급 (가점제)	○	청약 가점내용 확인서	본인	• 당사 주택홍보관에 비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직계존속	• 주택공급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없거나 그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수에 포함한 경우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직계존속	• 피부양 직계존속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3년 이상 부양하여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직계비속	• 만 30세 이상의 미혼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배우자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이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
		○	당첨사실 확인서	배우자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이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출입국사실증명원	직계존·비 속	- 가점제 당첨자는 필수 제출 - 발급기간: 직계존·비속의 출생일부터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직계존속 부양가족 제외사항: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 에서 제외 ※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사항: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피부양 직계존속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		피부양 직계비속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당첨자의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	주택 및 분양권 등 소유여부 증명서류	해당주택	- 일반주택: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 무허가주택: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한 무허가 건물임을 확인하는 공문 - 폐가/멸실 주택: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소형저가 주택 등)
		○	당첨사실 소명서류	해당자	해당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	전세피해자 확인서류	본인	전세피해자 낙찰주택 소유기간(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그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낙찰 받아 소유한 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받기 위한 경우 ※ 단, 낙찰 주택이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이면서, 주택공시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 ① 해당 임차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낙찰 증빙서류: 매각허가결정서 사본 또는 매각결정통지서 사본 ③ 해당 임차주택 등기사항증명서 원본 ④ 채권자의 확인서류: 배당표, 배당요구신청서 등의 사본 또는 배분계산서 등의 사본
대리인 신청 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본인	- 용도: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본인발급용, 대리인 발급용 불가)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 증서 - 대리인 접수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정 불가
	○		위임장	본인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주택홍보관에 비치)
	○		신분증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여권 정보 증명서)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외국인 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4.24.)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주택공급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 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여부, 세대주와의 관계 확인 등을 위해 모두 표기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 서류발급 시 필히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해당 직장에서 발급되는 모든 서류는 반드시 직인 날인 필요합니다.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 상기 당첨자격 입증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 재직증명서 (출산휴가 및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출산휴가,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서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또는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 계속 휴직으로 월평균소득 산정이 어려운 경우 휴직 전 정상 재직기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 ※ 출산휴가 기간 중 고용보험을 수령한 경우 출산전후 급여신청(확인서)	㉠ 해당직장 ㉡ 해당직장/세무서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 재직증명서 ㉡ 금년도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직인 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증명서(직인 날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발급되지 않을 경우 전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거나, 본인의 근로(연봉)계약서를 제출받아 월 평균 소득을 추정	㉠, ㉡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 근로자	㉠ 재직증명서 ㉡ 전년도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 해당직장
	직장가입자이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안되는 경우	㉠ 재직증명서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해당직장 ㉡ 세무서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	㉠, ㉡ 세무서
	신규사업자	㉠ 국민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공고일 이전 가입) 또는 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분) ㉡ 사업자등록증	㉠ 국민연금관리공단 /세무서 ㉡ 세무서
	법인대표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전전년도 재무제표, ㉢ 재직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명 ㉤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해당직장 ㉣ 세무서 ㉤ 등기소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간이지급명세서 ㉢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세무서 ㉡, ㉢ 해당직장
기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일용직 근로자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세무서

		※ 금년도 신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및 위촉(해촉) 증명서	㉞ 해당직장
무직자		㉠ 비사업자 확인 각서 (주택홍보관 비치) ㉡ 사실증명원(소득세 신고사실 없음 확인) ※ 퇴직자의 경우 전년도부터 모집공고일까지의 모든 소득 서류	㉠ 접수장소 ㉡ 세무서

- ※ 상기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음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중 결정세액이 환급 또는 없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제출(해당년도 모두)해야 함
 ※ 해당 직장, 세무서 등 해당 기관의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소득세 납부 입증관련 모든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해당여부	서류구분	확인자격	증빙 제출서류	발급처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입증서류	근로자	㉠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해당직장 및 세무서 ㉡ 건강보험공단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 납세증명서 및 납부내역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또는 소득금액증명 원본 및 위촉(재직)증명서 (과거 1년 이내 및 해당년도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5개년도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근로자, 자영업자 또는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5개년도 각각의 증빙서류 필요) ㉠ 소득금액증명원(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납세증명서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 세무서 ㉣ 해당직장

- ※ 상기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중 결정세액이 환급 또는 없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제출(해당년도 모두)해야 합니다.
 ※ 해당 직장, 세무서 등 해당 기관의 날이니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소득세납부 입증관련 모든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추첨제, 소득기준 초과 신청자에 한함)

해당여부	서류구분	확인자격	발급처
'부동산소유현황'이 있는 경우	필수	㉠ 부동산소유현황 (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 소유 현황에 표시되니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전국구)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행정복지센터 및 정부24

	추가 (해당자)	㉠ 공동(개별)주택공시가격 확인원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 ㉡ 개별공시지가확인원 (*소유 부동산이 토지이거나 단독·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상가,오피스텔 등)인 경우) ㉢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 (*단독·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상가,오피스텔 등)인 경우) (서울시 : 'ETAX 이용안내 > 조회/발급 > 주택외건물시가표준액조회'에서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서울시 외 : '위택스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조회'에서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 행정복지센터 ㉢ 서울시이택스(etax.seoul.go.kr), 위택스(www.wetax.go.kr)
	추가 (해당자)	농지법 및 초지법 등에 따라 토지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 농지대장 ㉡축산업 허가증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행정복지센터 ㉡ 지자체 축산과 ㉢ 토지이음www.eum.go.kr
'부동산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필수	㉠ 부동산소유현황(세대원별 각각 발급)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 본인 및 청약자 공동/금융인증서 지참 (※주택홍보관에서 청약자 및 세대원 전원 조회내역 확인)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주민센터 방문해 전국통합발급요청,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행정복지센터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보유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세대원 전원의 자산입증서류

구분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3조에 의거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과 그 주택의 부속토지”는 자산보유기준 적용대상이 됨 부동산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전체가액 중 해당 지분가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봄. 다만, 세대원간에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 세대원간의 지분 합계액을 소유한 것으로 봄		
		토지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업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계좌(계약금)로 계약금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모든 당첨자는 계약전에 당첨자격 서류검수를 완료하여야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구분	계약 기간	계약 장소	문의전화
정당 당첨자 계약 체결	2026.05.25.(월) ~ 2026.05.27.(수) 10:00 ~ 16:00	당사 주택홍보관 주소 : 경기도 파주시 평화로36, 상가동 124호 (금촌동)	1877-9720

- ※ 공급계약 체결 방법 및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일정 및 변경사항 등에 대한 공지사항은 추후 '파주금촌 금호어울림' 홈페이지(<https://pjkhapt.com>)를 통해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사업주체가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계약금은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현금 및 수표 수납 불가)
-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 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합니다.
- ※ 순위내 청약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 에게 우선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공급합니다.
- ※ 아래 "계약 체결시 구비사항" 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시 구비서류 안내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 기준	확인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본인 계약 시		○	1. 당첨유형별 자격검증 서류 일체	본인	•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일체
	○		2. 계약금 입금 증빙서류	본인	•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 주택홍보관에서 계약금(현금 및 수표) 수납 불가
	○		3.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여권 정보 증명서) ※ 외국국적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4.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인감증명서(본인 발급용)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대리신청 불가) / 용도 : 아파트 계약 체결용
		○	5. 추가 개별통지서류	본인	•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6. 인지세 납부 증명서류	-	• 공급계약에 따른 인지세 납부 • 우체국, 은행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 사이트(https://www.e-revenuestamp.or.kr)에 접속, 구매 및 출력
대리인 신청 시 추가사항	○		1. 인감증명서	본인	• 용도에 「아파트 계약 위임용」으로 직접 기재 ※ 본인 발급용에 한함
	○		2. 위임장	본인	• 주택홍보관에 비치.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		3.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여권 정보 증명서) ※ 외국국적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 분의 당첨으로 인한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본인의 책임입니다.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직계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당첨자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당첨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아파트 계약 체결용, 아파트 계약 위임용 등)
- ※ 대리인 계약 시에는 인감증명서만 인정하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지참한 대리인은 계약을 체결하실 수 없습니다.

■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인지세 납부 안내

- 아파트 공급계약서(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신청할 때 제출하는 계약서)에 대한 인지세는 사업주체와 계약자가 균등 분할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 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며 분양계약(전매 포함) 체결 시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지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022.12.31.개정된 「인지세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공급계약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 부동산 등기(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분실했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 2023.01.01. 시행된 「인지세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공급계약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부를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인지세법」 제1조,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8조에 따른 인지세 납부방법

인지세 납부 안내						
대상 증서	공급계약서 및 전매계약서(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					
납부 기한	계약체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 [전매] 명의변경 승인일					
납부 방법	1.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 접속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매 및 결제 → 전자수입인지 출력하여 과세문서(공급계약서 등)에 첨부 2. 우체국 및 은행에 방문,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입하여 과세문서(공급계약서 등)에 첨부					
납부 금액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납부세액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 2022.12.31.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조제9항 일부개정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대한 인지세는 납부지연 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분양대금 납부 계좌 및 납부 방법

공급대금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잔금	우리은행	1005-204-057486	주택도시보증공사 동부기금센터

- ※ 상기 지정계좌로 직접 무통장 입금[당첨 동·호수, 공급신청자(계약자) 성명으로 입금]하고 무통장입금증을 계약 시 지참하여 주십시오.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301호 홍길동 계약자일 경우, 입금자명을 '1010301홍길동'으로 기재)
- ※ 계약금 납부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당사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 상기 분양대금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는 효력이 없으며, 수분양자는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 분양대금 납입을 인정받지 못함에 있어 사업주체의

책임이 없습니다.

※ 계약금, 잔금 등의 대금 오납입에 따라 계약 미체결, 연체료 발생 등의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가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계약금 및 잔금은 지정된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계약자 대출안내

- 본 아파트는 공정을 100% 이후 분양하는 후분양 단지로 사업주체등은 별도로 대출을 알선하지 않습니다.
- 잔금에 대한 대출은 계약자가 개별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가능하나, 관련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계약자는 금융기관에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잔금납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며, 개인의 사정에 따른 대출금융기관의 대출축소 및 대출 불가에 경우에도 잔금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미납 시 연체료가 부과 됨)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에 따라 잔금 대출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본인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특히 청약 접수 전 본인의 신용상태 및 대출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잔금의 선납할인은 없으며 미납부로 인한 지연이자는 공급계약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계약 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입주대상자는 계약체결 기간 전 상기 일정 내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를 준비하시어 주택홍보관으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유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계약금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 후 무통장 입금영수증을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하며, 주택홍보관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수납은 할 수 없습니다.
 - 아래 사항에 해당될 경우 당첨 및 체결된 계약의 취소 및 해약의 사유가 됩니다.
 - ①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는~~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합니다.
 - ②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당첨자 계약체결기간 준수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 체결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관리 합니다.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 처리, 계약 취소에 관한 사항(「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4호)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 부적격사항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는~~ 경우,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되며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계약체결 후에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1)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 참고
- (2)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특례제외)
- (3)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고발조치하여 당첨통장 재사용할 수 없으며, 관계 법령에 의해 조치됩니다

(4)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 부적격 당첨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주택홍보관에 방문하여 "계좌부활요청서" 작성 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아파트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1년, 수도권 외의 지역은 6개월(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 위촉지역 3개월로 해당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최초 분양계약자가 불법행위 등으로 인해 분양계약이 취소될 경우 명의변경을 통하여 분양권을 매수한 양수인은 사업주체 등에게 이와 관련된 이익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시 계약서에는 입주자모집공고와 청약신청 시 사용한 주택형(약식)이 아닌, 설계도서상의 주택형으로 표시하여 발행합니다.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공급 시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신청접수 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또는 정정은 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 또는 관련법 위반 등으로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계약 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에 준합니다.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 주택홍보관에 방문하시어 자격확인 제출서류 등을 사전에 제출하시고 부적격사항 및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세대주, 거주기간, 부적격사유 등)
- 본 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부동산 거래의 신고를 사업주체와 공동으로 하여야 하므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구입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0.02.21.부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 시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토지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 상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해야 하고,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준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에 통보합니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 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봅니다. 다만, 제57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함. 이하 이 항에서 같음)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제출한 자격확인 서류 검토 결과, 가점점수가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가점점수가 다음 순위 예비입주자의 점수를 초과한 경우에만 예비입주자 자격이 유지될 수 있으며, 다음 순위 예비입주자 점수보다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 분양권 전매는 계약자가 사업주체에 대한 채무를 모두 이행한 경우에 한하며, 분양권 양수인은 계약자의 본 공급계약 과정에 체결한 약정에 대하여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또한 전매로 인하여 발생 될 수 있는 민형사상, 세무상 기타 제반 법적문제에 대하여 계약자 및 분양권 양수인이 책임집니다. (전매는 정부의 부동산대책 및 관계법령의 제, 개정예 의해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분양권 전매 전까지 채무관계(미납대금, 연체료 등)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해당 목적물에 가압류, 압류, 추심명령 등 제한채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이를 해제 또는 소멸시켜야

분양권 전매가 가능합니다.

- 전매자간 작성(합의)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상 분양권 전매 금액이 최초 체결한 분양계약 상의 분양대금과 상이하더라도,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는 무관하며 양도인 및 양수인이 책임집니다.
- 계약자 또는 분양권 양수인이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일 경우에 계약을 하거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기타 관련법규에 따른 신고 등 제한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해태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불법청약 등 최초 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당 분양계약이 취소되더라도 분양권 매수자는 이에 따른 피해를 보호받을 수 없으며,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동산 등기(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중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매)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는 건축공정률이 100% 완료되어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2025년 10월 31일) 완료된 아파트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을 득하지 아니하였음.

8 사업주체 무상제공 품목

구 분	적용주택형(타입)	비 고
발코니 확장	전 타입	-
침실 불박이장	59A, 59B, 74	에넥스
3구 가스쿡탑	46, 59A, 59B, 74	파세코, PGC-A365RH
전기 인덕션	26	파세코, CHRS E201FB
발트인 전기 오븐	59A, 59B, 74	삼성전자, NQ36A6555CK
부부욕실 비데	-	쿠쿠, CBTL2030W

※ 본 아파트는 사업주체 무상제공 품목 이외의 선택옵션 품목이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유의사항

- 본 아파트는 공정률 100% 이후에 분양하는 후분양 단지로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각 주택형별 발코니확장은 무상제공으로 공급함으로 별도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될 시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확장 부분의 외부창호는 이중창호(침실1 발코니 등이 비확장의 경우 외기면 단창호)로 설치되며, 창호 및 도어사양(제조사, 브랜드 및 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확장형 세대에서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 부위의 경우 발코니 내측에 이중창, 외측에 단창호가 설치되며(다용도실의 경우 내부에 터닝도어, 외부에 이중창),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고 이에 따른 결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확장 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에는 수전, 드레인 및 선풍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으며, 인접 상·하층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선택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인접세대가 발코니를 비확장한 경우 이와 접한 발코니 확장세대의 확장 발코니 벽면에 단열재 등이 시공되나 결로발생 및 일부 벽체의 돌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 및 창호 등은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재질 및 사양이 실제 시공시 인허가 협의 완료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배관 노출 및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가 시공사와 무관하게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시공(가변형 칸막이 제거 등)하는 경우,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며, 개별 시공한 부위에 발생한 하자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마감재 오염 또는 훼손, 결로, 단열, 주변 세대 피해 등)

- 발코니 확장에 따라 창호, 단열재의 추가 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외벽은 발코니 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체 및 인테리어, 가구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시공시 외관구성상 일부세대의 발코니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선홈통을 가리기 위한 벽체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형의 발코니 확장범위 및 확장에 따른 발코니 창호 설치 기준은 '파주금촌 금호어울림'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본공사시 공동주택(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환기 덕트 포함)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발코니 창호 등의 형태 및 사양, 제조사와 모델, 색상디자인, 크기, 개폐방식, 개폐방향 등은 기능 및 미관개선 등을 위하여 본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사업주체는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경우 난방장비 용량 증설에 따른 비용 및 난방부담금 등은 입주시점에 아파트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추가부담 하여야 하며, 난방효율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으로 인한 가구 배치로 인하여 창문을 통해 어린이들이 떨어지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니, 가구 배치 시 창문과 이격 또는 난간높이 확보를 통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생산/공급의 중단 등의 사유로 동질 및 동급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 주택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주택홍보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새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는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발생 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발코니 외부 전면 창설치 및 발코니 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및 다용도실, 실외기실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준공이후 발코니 구조변경을 할 경우 개별세대로 행위허가(신고) 절차를 득하여야 하고 사전허가 없이 불법구조 변경하여 확장하는 행위는 [건축법],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하는 사항으로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 시, 엄중한 처벌과 원상복구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며, 발코니 확장시 동일 주택형이라도 해당 동·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및 깊이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9

입주예정일 및 관련절차

- 입주자 사전방문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
- 입주자의 입주 개시 2개월 전에 실 입주월을 통보하고, 실 입주 45일 전까지 입주자 사전방문을 2일 이상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로 안내드립니다.
- 사전점검 진행절차 : 사전점검안내문 발송 ⇒ 입주자현장 도착 ⇒ 접수, 교육 안내 ⇒ 입주자점검 및 지적사항 작성 ⇒ 점검표 제출
- 사전점검 대상 :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
- 입주예정일 : 2026년 06월 예정 (향후 일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키로 함.)
- 2021.02.02.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일 2개월 전에 실입주월을 통보하고, 실입주 1개월 전에 실입주일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통보일정 재 검토 요망)**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된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 시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지정기간 이내에 잔여 잔금, 연체료 등을 완납하고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제반서류 및 비용(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비용, 선수관리비 납부영수증 등)을 사업 주체에게 제출 및 납부한 후 입주증을 발급받아 입주하여야 합니다.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 등기 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38조에 의거 적용됩니다.

- 하자판정 기준도면은 준공도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10 단지역건 및 유의사항

※ 아래의 유의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길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문제 발생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을 따릅니다.

■ 설계·시공상 유의사항

- 공급면적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 단위인 m²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평형환산방법 : 형별 면적(m²) X 0.3025)
- 면적은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각 용도별 면적이 소수점 이하에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금액을 정산하지 않기로 합니다.
- 본 단지의 명칭, 동 표시, 외부색채와 외관, 옥탑디자인, 외부조명시설 등은 현장여건 및 인허가 관청과의 심의, 협의 과정에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타입은 세대의 내부 기둥 및 창문의 유무, 위치 상이에 따라 구분되어 있음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향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전에 사업부지 현장을 필히 방문하시어 현장여건 및 주변환경,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전자파, 전자기장애, 분진발생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 및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향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인쇄물에 표현된 옥상옥탑부, 주동형태, 창호형태, 축벽디자인, 외부색채, 외벽로그사인, 외벽마감, 식재, 바닥포장, 단지내 조경,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의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의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 대지측량 시 대지경계가 조정될 수 있으며 관련법에 따라 경미한 설계변경으로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주변 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 단지 내 시설물의 변경, 향, 층에 따라 일조권, 도로소음발생 등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홍보용 이미지 및 모형 등에 표시되는 주변 단지 및 건물, 시설물, 공원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정사항을 임의 제작한 것으로서 공급계약서 작성 시 현재의 상황과 다르거나 향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마감재 및 제품들은 자재의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본 공사 시 동질 또는 동급의 제품(타사 제품 포함)으로 시공됩니다.
-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걸레받이, 벽지,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VR모델하우스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석재 등 천연소재 자재의 경우 천연재료의 특성상 VR모델하우스와 일부 상이한 색상과 무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각 면적별 단위세대의 마감재의 색상 및 제품은 차이가 있으므로 VR모델하우스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테리어 가구 시공에 의하여 일부 면적이 가구 벽체 등으로 채워지는 부분이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타일의 나누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주방, 아트월, 욕실, 발코니 등)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환기 덕트 포함)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의 수전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할 수 없음
 2.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설치되는 발코니에 인접한 세대는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공사 시 유지관리를 위한 설비공간의 점검구나 문이 설치될 수 있으며, 주차장, 상가의 배기로 인한 냄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홍보물 및 실내투시도에 표시된 가전제품 및 인테리어소품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홍보관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 부분, 카달로그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모형 및 각종 인쇄물 등에 표현된 조감도, 조경배치도, 시설물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모형제작 및 그래픽 표현의 한계 등으로 인해 실제와 다를 수 있으나,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시공 시 구조 등의 안정성 및 입주민의 이용효율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구획선과 시설물의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영향평가와 심의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체결 시 평면도, 배치도, 현장여건 및 주변환경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은 주민휴게시설, 주민운동시설 등으로 시설물 및 수량, 마감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 상품의 기타공용, 계약면적은 단지공동시설 및 부대복리시설의 계획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조경(수종, 식재개수 등) 세부 식재계획 및 외부시설물의 위치는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향후 관리 안전상의 이유로 옥상출입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 공용부 공간을 임의로 전용할 수 없습니다. 특히 세대현관문 앞 EV홀 전실 등은 사유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조경, 조경수 식재는 시공 시 단지조화 등을 고려하여 설치나 위치가 변경될 수 있고, 관계기관의 요청 또는 설계변경에 따라 조경선형, 포장, 조경시설물의 색채, 형태, 재료,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의 실 대지측량, 현장여건,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주동 및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의 외관(입면창호, 난간, 로고 등의 형태 및 색), 공용부분의 계획(조경, 주동출입구, 지하출입구 등)은 실제 시공 시 설계 개선, 시공성, 편의성, 구조 개선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계약자에게 별도의 동의 절차를 받지 않습니다.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 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제시된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의 각종 내용이나 설계 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사업시행변경인가 또는 설계의 변경에 대해서는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권리를 사업주체에 위탁합니다.
- 건물의 건축물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상의 구획선 및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 지분 및 평형별 공급면적 등이 입주 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 대지측량 결과에 따른 대지 경계선 조정, 관련법규의 변경, 건축허가 변경 및 신고 등에 따라 단지 조경 선형 및 세부 식재 계획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 환경

- 본 아파트 단지 외부의 개발계획(조경, 토목, 기타 구조물 등의 계획일체)은 주변 환경, 외부 여건, 개별 인허가 결과, 지자체 방침 및 계획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업승인 변경이 수반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설계변경 시 개별 동의를 별도로 받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 단지 외부의 건물 신축, 단지 외 차량통행에 따른 소음, 진동, 분진, 전자파, 전자기장애, 지장물 등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단지 내 건축물의 배치 등으로 동별 층별 호수별로 일조권, 조망권, 생활권, 환경권 등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로, 종교시설, 주차장,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등 도시개발구역 내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또는 설치로 소음 발생 및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사전에 사업부지 및 주택홍보관 내방을 통해 이를 필히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공급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대지 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지 내, 외부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 진동, 매연,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지 남측으로 금촌율목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조성, 건축 예정인 바, 계약 및 입주 후 공사로 인한 소음 등이 추가적으로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대지 남측 금촌율목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지연시 도로, 주차장,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등 도시개발구역 내 기반시설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금촌율목지구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도로, 주차장,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등 기반시설의 위치, 면적, 사용시기 등이 변경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대한 일체의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부 환경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문주 및 경비실, 근린생활시설 및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한 일부 세대는 시야에 간섭이 있을 수 있어 조망권이 다소 불리할 수 있습니다.
- 저층 일부 세대는 조경용 수목으로 인한 일조권, 조망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일부 세대는 보안등, 옥탑 및 조경용 조명 및 차량 불빛으로 인하여 불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 특성상 차로(단지 내외 도로와 비상차로), 야간조명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에는 진출입 차량에 의한 소음이 발생하거나,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일부 간섭 받을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은 채광 창호가 협소하거나, 창 위치에 따라 부분적으로 채광이 제한됨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엘리베이터가 면한 세대는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전 확인하기

바랍니다.

- 근린생활시설 및 아파트 부대복리시설의 실외기 시설, 자연설비, 환기설비 등이 외부 공간에 설치되어 일부 세대는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 보호가 침해되거나, 소음 및 냄새 등으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과 엘리베이터 홀이 직접 연결되거나 동별로 주차장 접근성 및 이동거리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주차장으로 외부에서 비, 눈 유입이 있거나 바닥을 청소하는 경우 등으로 인해 주차장 바닥에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및 각 동 출입구에서 엘리베이터 홀로 출입하는 통로는 동별 구조적 조건(통로폭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출입문 크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주차장 출입구 및 소방용 비상차로에 인접한 세대는 차량소음, 경보음, 야간 차량불빛, 공회전에 의한 매연 등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방범용 CCTV는 지하주차장, 단지 차량출입구, 놀이터, 엘리베이터 내부 및 지상 1층 엘리베이터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 단지 배치구조 및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어린이놀이터, 옥외 주민운동시설 등에 의해 인접 세대에 생활소음 피해, 실내투시로 인한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옥외 주민운동시설, 생활폐기물 보관소, 자전거보관소, 환기탑 등의 위치, 크기 및 개소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 진입램프 진출입구, 외부도로 진출입구 및 단지 내 도로에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과속방지턱 등이 설치되며 위치 및 설치 개소는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에는 차량소음 및 전소등 등에 의한 사생활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주동 및 부대복리시설 주변에는 쓰레기 분리수거함(재활용품 보관소), 자전거보관소, 채광/환기창, D/A(환기구), 외부계단 등이 설치되고, 저층 세대 발코니 전,후면 하부에 팬룸, D/A(환기구)의 설치로 구조물, 그릴창, 그레이팅, 난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환경권 및 생활권, 조망권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이 간섭받거나, 소음피해 등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단지의 배치 특성 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동간 거리, 세대 별 창호 위치 등의 상이에 따른 불편
 2. 본 계약물건의 계약체결 이후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석축 등의 종류/높이/이격거리 등의 변경 등과 배치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에 따른 불편
 3. 휴게공간과 필로티,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 놀이터, D/A(환기구), 주민운동시설, 쓰레기 분리수거장(재활용품 보관소), 자전거보관대, 조경시설, 산책로, 채광/환기시설물, 실외기 등의 설치 및 통행에 따른 불편
 4. 단지 내 주출입구, 부출입구, 주차출입구,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경비실 등 단지 내외 시설물 등에 의한 침해로 인한 불편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공간과 지하부분 엘리베이터홀, 계단실, 외부 엘리베이터 및 계단실은 습도 및 온도차에 의해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및 외부의 시설물, 자재 및 형태(입면, 색채, 재질, 조정)등은 인허가 관청의 명령, 자재의 품질, 갑작스런 관련 법규 변경 등에 의해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습니다.
-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 진동, 매연,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전기 공급을 위한 한전 시설물(전주, 변압기, 개폐기 패드 등)이 동 주변 지상에 설치되어 일부 세대에 인접 설치 및 보일 수 있습니다.
- 한전PAD, 통신맨홀 등의 인입 위치 및 외부 배관 위치는 한국전력, KT 또는 기간 통신사업자와의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통신실의 Work Group Switch Hub, 광분배기 및 세대 통합단자함 내에 시설되는 멀티플렉서(MultiPlexer)등은 기간사업자 제공 분으로 시공사에 설치를 요구 할 수 없습니다.
-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조경등, 경관조명, 및 전기선로, 통신선로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각 동 주출입구 공용홀(로비) 규모 및 천장고는 동 타입별로 다를 수 있으며 청약자 및 계약자는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전기 가동시 발전기 D/A에 의한 인접세대(실) 및 보행자에게 소음, 진동, 매연 등으로 인한 불편함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위치 및 설치 개소는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무인택배 및 주차관제시스템 등 입주자 편의시설의 원활한 사용을 위하여 개인정보(휴대전화번호, 차량번호 등)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무인택배설비의 설치 위치 및 개소, 설치형태, 효율성 및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관/배선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또는 팸플릿 등의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각종 조감도, 배치도, 투시도 및 평면도와 VR모델하우스, 주택홍보관 내 단지 및 세대 모형도 등[단위세대 실내마감(위생기구, 창호, 등기구 및 각종 가구의 종류, 위치 등 포함), 외부색채계획, 단지주변 건물 및 도로, 조경시설물, 단지 진입로 등 포함]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인쇄 및 편집과정에 일부 오류, 오기, 오타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공용부 및 세대 동파가 우려되는 구역에 배관 동파 방지를 위한 열선이 설치되며, 사용에 따른 전기료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환기구가 일부 동의 전·후 측면에 설치되어 주차장 소음 및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 3층 엘리베이터홀에 결로 방지를 위해 제습기가 설치되며, 제습기 가동에 따른 비용이 발생될 수 있고,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지하에는 기계실 및 펌프실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시 미세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지하 PIT층에 집수정 및 배수펌프가 설치되어 일부저층 세대에 소음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커뮤니티시설 포함)의 지상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에어컨 실외기 등으로 소음 및 진동 등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실외기 등의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쓰레기 분리수거장(재활용품 보관소)은 각 동 주변에 설치(설치 위치는 카탈로그 등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람)되며, 설치 결과에 따라 일부 저층세대는 조망권 및 환경권이 간섭받거나, 이로 인한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각 동에 지하주차장 이용시 일부 동에 대하여 주차대수가 균등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 주차장 및 비상도로에 의해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일부동 저층세대에 한하여 옥외계단 및 기타시설물 등에 의한 시야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필히 계약 전 모형 및 인허가 도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동 출입구에 설치되는 우편물 수취함은 우편물 수취 및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각동 주출입구 현관 레벨을 기준으로 설치되며 주출입구 현관레벨에 의해 우편물 수취함 위치가 상이하며, 또한 각 동별 우편물 수취함 위치 및 개수가 상이하니 필히 계약 전 모형 및 인허가 도서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안전관리시스템을 위한 CCTV의 설치로 인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 운행속도는 지하층을 포함한 총 층수에 따라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옥상에 TV 공청 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이며, 설치 위치 및 규모, 형태 등은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동통신 기간사업자 안테나/중계설비가 지하주차장에 설치될 예정이며, 전파상태에 따라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추후 이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위치변경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단지내 전파상태에 따라 지상 녹지구간, 아파트옥상, 지하주차장 등에 이동통신 기간사업자 안테나/중계설비가 추가 설치될 수 있음)
- 단지 배치의 특성상 전파방해, 난시청 등으로 인하여 TV 및 라디오, DMB방송 일부 채널 수신에 불량 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관

- 주동 옥탑이나 외벽에 경관조명, 조형물 및 단지로고 사인물 등이 설치될 수 있어 일부 세대의 조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운영, 유지, 보수 등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외부의 색채계획 및 경관조명 계획, 옥외시설물 등은 공사 중 해당 지자체와의 협의/자문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 및 특정 서비스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홍보사인물(없음), 영구배수시스템 유지, 휴대폰/인터넷을 이용한 홈네트워크서비스/무인택배시스템 운영 및 유지비용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입면 마감재 종류에 따른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미술장식품 위치 및 형태는 설치계획심의를 득하여 확정, 설치될 예정입니다.
- 모형 및 조감도 등에 표현된 공동주택 외벽의 줄눈 형태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옥탑구조물, 야경관용 조명, 공청안테나, 위성안테나, 피뢰침, 측뢰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동별 특이사항

- 일부 세대는 동 별 배치에 따라 일조권이나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및 일조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삿짐 운반 시 사다리차(크레인) 사용이 불가능하며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 현관 등의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공간은 공용부분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주출입구 홀,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의 지붕 등은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 사용으로 인한 피해 발생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아파트 내 지하주차장 램프에 인접한 세대는 차량 진출입 시 통행 소음 및 경고등 등에 의해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체결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엘리베이터와 접하거나 인접한 실은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코어 내 우편물 보관함의 설치 위치 및 개소는 실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06동 지하 1층 및 105동 지하 2층 부대복리시설로 코인세탁실 설치 계획으로 소음, 냄새, 진동 및 간섭이 있을 수 있으니 해당 동 청약 시 반드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04, 106, 107동 주변으로 주민공동시설이 위치하여 주민 공동 이용에 따라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해당 동 청약 시 반드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무인택배함은 101동 및 104동 지상 1층, 106동 지하1층에 설치 계획중이며 설치 위치 및 개소, 설치형태, 효율성 및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102, 103, 104, 105동 인근에 근린생활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소음, 냄새, 진동 및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105, 106동은 복도창이 설치되지 않는 개방형 복도 형태로 시공되어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출입부 문주 계획으로 인접동의 저층세대에 조망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에서는 단지 내 야간조명 효과, 야간 시 차량 진출입, 주변도로의 차량통행에 의한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자전거 보관소는 법 또는 사업승인 조건을 충족하는 수량을 설치하며, 설치 위치 및 규모는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비상시 소방작업 등으로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비상 발전기는 관련 법규상 일정 주기로 시험 운전을 하게 되어 있으며, 운전 시 운전대에 따른 소음, 배기가스,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에는 실외기가 건물 내,외부에 설치되며 이로 인해 일부 주변 세대에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경미한 설계변경 범위 안에서 옥탑, 지붕, 난간, 입면, 아파트시설물 등의 위치가 이동되는 등 디자인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내 노출되는 옹벽이나 구조물의 마감은 변경될 수 있으며, 위치에 따라 시공되는 마감재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아파트 내 바닥포장, 지상 및 지하의 주동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아파트와 외부도로 사이의 경계는 인·허가 관청의 지침 및 시공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주택홍보관의 분양 모형과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이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 시 허용오차 내 분양가 정산은 없습니다.
- 아파트 내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하며, 공유시설물에 근접한 세대에는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내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이 노출될 수 있으며, 아파트 배치상 기계실, 전기실, 주차장, 급배기타워 및 생활자원보관소(재활용보관시설 등), 수목, 지상 소방차이동동선, 소방차 전용주차구획, 및 공기안전매트 설치구간, 보도, 생활폐기물보관소, 자전거보관소, D/A, 지하주차장 출입구 등의 위치에 따라 저층부 세대의 경우 조망권 및 환경권, 소음·진동·냄새 등 사생활 침해할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니 자세한 내용은 주택홍보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조경공간에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 발전기 연도 등)이 노출되어 있고, 단지 내 통행로 등에 인접할 경우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내에 설치된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옥외시설물, 주차장진출입구 등의 이용에 따른 소음 및 차량불빛 등의 사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지상1층 및 지하1~3층 진입홀 및 지상층승강기 홀 크기는 각 동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옥상 난간 턱 높이 조정, 난간형태 및 재질은 변경될 수 있으며, 단위세대 창호계획 및 공용부 창호 변경 등에 따라 입면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내 출입구(주출입구, 부출입구, 보행자 출입구)의 선형 및 레벨은 현황에 맞춰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내부 포장의 재료, 패턴 및 색상, 도로선형 등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아파트 내 도로 등의 경사도 및 아파트 레벨은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되거나 옹벽 또는 조정석이 추가 또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내 전기공급을 위해 한전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1층 출입구 부분에 생활자원보관소(쓰레기 분리수거함 등)이 설치되어 저층부 세대에서는 악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주출입구 통행 시 악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어린이놀이터, 옥외 주민운동시설 등에 의해 인접 세대에 생활소음 피해, 실내 투시로 인한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여건상 사다리차 등의 차량 접근이 동별, 라인별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스프링클러 배관 및 개수 등 소화 시설물의 기준은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산책로 설치로 인해 아파트 세대의 실내가 투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놀이시설물의 배치 및 디자인은 분양 시 홍보물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택 단지 내에 설치되는 미술작품은 미술작품 설치 계획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위치, 형태 등이 심의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대지 주위 도로 폭, 단지 내 도로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경 관련 시설물(수목·시설물·조경시설·포장·기부채납 구간 등) , 단지 레벨차에 따른 옹벽의 형태, 공법 ,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비상차량동선 등은 사업추진과정(인·허가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조경 공간의 형태, 도로의 선형, 조경시설/포장의 색채, 재질 및 위치, 식재의 수종 및 위치 등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녹지구간 내 조경토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일부 침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 전면에 조경수가 식재되었을 경우 저층세대의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고사와 전혀 관련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는 일부 동에 근접하여 설치되어 있어 다른 동에서 이용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 각 세대의 기본 천정고는 2.30m로 시공됩니다. (우물천정 및 발코니, 욕실 등 제외)
-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당사가 안내하는 세대 내의 위치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실외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냉장고, 세탁기는 가구 및 다용도실 출입문의 규격에 따른 규격 제한이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가전제품의 사이즈를 확인하여야 함)
- 46타입 세대 주방 하부장 중 빌트인 세탁기 공간은 배관 외 별도 마감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세대 내 주방가구 하부에는 시공 선후관계상 주방가구가 먼저 설치되어야 하므로 주방하부장 하부에는 도장마감 외 별도 마감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세대 싱크대 하부장에 온수분배기 및 배관 설치로 실제 사용공간이 다소 협소할 수 있습니다.
- 세대 급수계량기, 가스계량기 및 전기계량기는 원격 검침 방식이며, 세대 월패드로 표시된 검침량은 실제 검침량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환기디퓨저, 가스배관 및 계량기 위치는 공사용 설계도면 기준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가스배관은 설치 위치에 따라 노출로 설치될 수 있음.
- 주방가구 상부에는 렌지후드 배기 덕트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후드 상부장에는 주방 자동소화장치가 설치되며, 후드 상부장 일부 공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주방 상부장이 가스배관 등 타시설물과 간섭되는 일부 평형은 상부장의 깊이 축소 및 문짝이 완전히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에어컨 설치 및 사용 시 응축수 배수관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 거실의 에어컨 응축수 배관은 하부에(스탠드타입 에어컨 기준), 안방에어컨 응축수 배관은 상부에(벽걸이타입 에어컨 기준) 설치되므로, 에어컨 설치 방식에 따라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화장실 천정에 설치되는 점검구의 크기와 설치 위치는 타입별, 층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면적은 확장 전 기준으로 확장형의 실 유효면적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욕실, 발코니 등 타일의 줄눈간격은 시공 중 다소의 차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실내외 온도차가 크거나 음식조리, 가습기사용, 실내 빨래건조 등으로 습기가 많을 경우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실내공기를 자주 환기시키는 것이 결로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 실외기실에 입주자가 설치한 에어컨 실외기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 발코니, 실외기실 등에는 배관이 노출되며, 세대 내 환기시스템은 본 공사 시 설치위치에 따라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고, 건축입면 및 내부 마감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환기설비는 1종환기 방식으로, 전열교환 환기시스템이 적용 됩니다.
- 전열교환기 및 덕트가 노출 설치되고, 작동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방 발코니 및 다용도실에 설치된 배수배관으로 인한 배수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의 드레스룸, 팬트리, 욕실에 바닥 난방이 적용되며, 별도의 난방조절기는 설치되지 않고 평면에 따라 거실 및 인근 침실에서 통합 제어됩니다.
- 발코니는 비 난방구역으로 발코니에 설치된 수전류, 소방배관, 배수배관, 배수트랩(Trap) 등은 겨울철 동결 및 동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대피공간은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2-745호)'에 의거하여,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 관리되어야 하며, 대피공간을 창고 등 대피에 장애가 되는 공간으로 사용하거나 입주자 임의로 개조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대피공간은 긴급 상황으로부터 대피를 위한 공간으로 관련법에 따라 설계 및 시공되는 바, 단열재 미설치로 인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내공기를 자주 환기시키는 것이 결로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 아파트 지상1~2층 및 최상층 세대 창호 주위에(고정창호 부위 제외) 동체감지기가 추가 설치되며, 기타층은 거실에만 동체감지기 설치됩니다.
- VR모델하우스에서의 월패드, 배선기구, 스위치, 조명기구, 통신단자함, 세대분전반 등의 위치 및 제조사는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분전반, 통신단자함은 별도로 설치되며, 침실 문 뒤 벽에 설치됩니다.(26m² 세대는 거실/침실에 설치됨)
- 세대 내 조명기구는 실시공시 VR모델하우스와 위치 및 색온도등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실간 벽체 일부가 경량벽체로 설치되어 있어, 중량물 설치나 못박음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량물 설치 및 못박음 시에는 벽체의 파손 또는 설치된 중량물의 탈락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벽체 내부에는 전기/통신용 배관 및 각종 설비배관(급수, 온수 등)이 매립되어 있으므로 벽체에 못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 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내부 마감재(마루재, 타일, 도배지, 석재 등)는 실제 시공 시 자재의 고유 문양 및 색상에 따라 육안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실별 치수에는 천정물딩이나, 하부걸레받이, 마루판의 치수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입주 시 실측을 통하여 가구배치를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은 실제 시공 시 사용성 개선 등을 위하여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 외부 창호는 풍압 등을 고려하여 세대별, 층별로 창호 사양(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이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으며, 창호 개폐방향이나 창호 분할 등도 입주민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외부 창호 나누기, 크기, 사양 등은 VR모델하우스 기준으로 적용하되 본공사 시 입찰결과 및 시공 여건에 따라 동급 또는 동급 이상으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창호상세 및 세부치수, 부속철물, 손잡이 등은 제작사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창호 형태, 크기, 창호 주변 벽체길이 및 문의 열림 방향은 입주민의 편의성 확보나 품질향상을 위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문턱 높이는 물 넘침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욕실화의 높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문 개폐 시 걸릴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구간 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 출입 시 문짝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욕실 천정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정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해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거실 및 복도 등에 벽지 외의 두께가 있는 마감재의 마감으로 인하여 안목길이가 줄어 들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직접 노출되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1동, 102동, 103동, 104동, 107동 3층~10층 세대 대피공간 외벽에 피난용 완강기 지지대가 설치되며, 완강기 형태 및 위치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105,106동은 복도에 피난용 완강기,지지대 설치됨)
- 본 공사 시 세대 각 콘센트와 스위치 등의 설치 위치, 높이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VR모델하우스와 다르게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인조석과 천연석 등 석재류는 자재의 특성상 이음 부위가 육안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배관 점검을 위해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이사 시 세대 난간대 높이 등의 간섭에 의하여 사다리차를 이용한 이삿짐(냉장고, 불박이장, 김치냉장고, 쇼파 등)을 외부로 통한 세대내 반입이 불가할 수 있으며, 이사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벽 마감재가 설치되는 세대는 외부 창호, 난간 및 벽체가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고, 설치 위치 및 디자인, 마감 상세 계획 등이 타 세대와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학교 관련 유의사항

- 학교 설립 주체는 유·초·중은 파주교육지원청, 고등학교는 경기도교육청이며, 지구 내 모든 교육시설의 설립 등은 개발(실시)계획의 변경 및 해당 교육청(교육지원청)의 학교설립 시기 조정, 설립계획 보류(취소), 학생 수용 여건 변화 등에 의해 추후 변경될 수 있고, 설립계획 및 학생수용계획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 시기 및 학생 수, 인근 학교 배치여건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교육지원청)에 반드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추후 일체의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 공동주택에 입주 예정인 초등학교 신입생의 경우 금촌초등학교, 중학생들은 금촌중학군(문산중, 파주광일중)에 배치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교육지원청)으로 반드시 문의하여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하는 것으로 추후 이에 대하여 일체의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1. 공통사항

- 부대복리시설은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주민운동시설, 어린이집, 경로당, 작은도서관, 지하주차장 등이며 기타시설로 무인택배보관함, 자전거 보관대, 쓰레기 분리수거장(재활용품 보관소) 등이 설치될 예정으로 인접 저층부 세대는 외부통행으로 인한 소음 및 야간조명에 의한 간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구성 및 건축 계획은 공간 활용의 개선을 고려해 실 배치, 평면, 입면, 단면, 창호 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이용에 대하여 각 동별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배치 및 이용여건 등에 대해 충분히 확인 바랍니다.
- 본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추후 입점자가 설치하는 식당 주방에서 발생하는 냄새, 연기 등으로 인해 인근 주변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에어컨 실외기 소음 및 진동 등의 불편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인승,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및 아파트 내 공용시설(엘리베이터, 주차장, 편의시설, 주민공동시설 등)의 경우 위치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 이후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커뮤니티 시설

- 커뮤니티시설의 집기류(마감재 포함)는 동등수준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커뮤니티시설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 등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어린이집

- 단지내 어린이집의 운영자는 추후 민간업체로 선정할 예정이며, 운영자 선정이 어려울 경우 어린이집 운영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4. 주차장 및 지하 계획

- 주차장의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는 2.3m, 주차공간의 높이는 2.1m 입니다.
- 주차장은 공동사용이며 세대별로 주차라인을 지정하여 주차할 수 없습니다.
- 주차대수는 총 1,162대이며 지하 1,123대, 지상 39대입니다.(근린생활시설 포함)

■ 친환경 주택 성능 수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에 적용]

구분		적용여부
건축부문 설계기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제7조 제3항 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기계부문 설계기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제7조 제3항 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적용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적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전동기 사용(라목)	적용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마목)	적용
	절수형 설비/절수기기(바목)	적용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적용
전기부문 설계기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제7조 제3항 제3호)	수변전설비(가목)	적용
	간선 및 동력설비(나목)	적용
	조명설비(다목)	적용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라목)	적용
	공용화장실 자동점멸 스위치(마목)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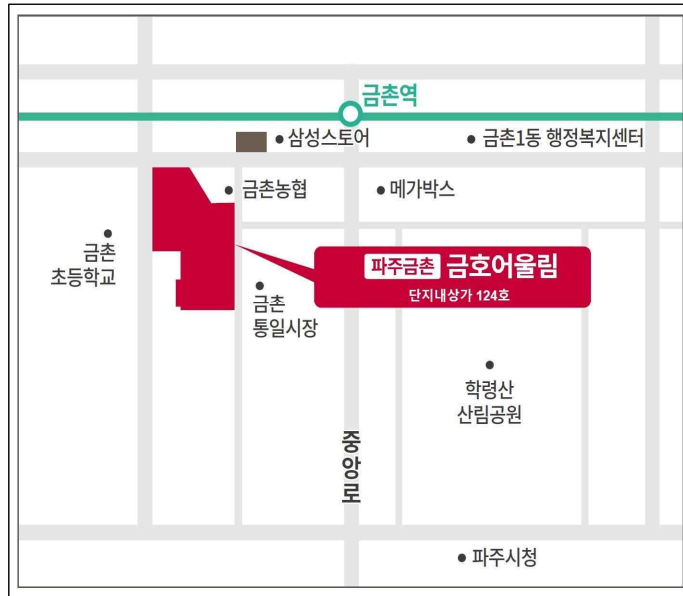
· 「주택법」 제39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8조, 「녹색건축 인증 기준」 제3조에 따라 인증된 공동주택의 항목별 인증등급을 아래와 같이 표시함.

구 분	감리회사명	감리금액(원, VAT 포함)	비 고
건축감리	(주)나우씨엠건축사사무소	2,230,282,720	-
소방/통신감리	(주)케이제이종합엔지니어링	1,358,600,000	-
전기감리	신성종합건축사사무소(주)	861,300,000	-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 분	사업주체	시공회사
상호명	파주시금촌2동제2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금호건설 주식회사
법인등록번호	284971-0002726	110111-0134877
주 소	경기도 파주시 금정12길 19, 2층(금촌동)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4(송월동)

■ 오시는 길



- 현장위치 :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337-15번지(금촌2동제2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주택홍보관 위치 : 경기도 파주시 평화로36, 상가동 124호(금촌동)
- 청약 및 계약 문의 : ☎ 1877-9720
- 홈페이지 : <https://pjkhapt.com>